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. 2. 9 선고 2020가단501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(일부판결)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2. 9.

주 문

1.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,

가. 피고 B는, 1) 3/11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. 6. 23. 접수 제27055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, 2) 4/11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. 2. 13. 접수 제5239호로
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

나. 피고 C는 2/11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. 9. 14. 접수 제34147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이영남

별지